

지속적 고용지원

NFOCUS 서비스 코드

TBI 지속적 고용지원 8190

서비스 정의

지속적 고용지원은 HCBS 외상성 뇌손상(TBI) 면제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일대일 간헐적 지원을 제공하여 참가자가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에는 취업 성공 여부 판단, 현장 단기 기술 지원, 현장 내 자연스러운 지원 개발 및 육성, 필요에 따라 취업 관련 목적으로 참가자가 고용주, 동료 또는 고객에게 자신을 옹호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제공 조건

- A. 이 서비스의 필요성은 참가자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참가자의 사람 중심 계획(PC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PCP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1. 지속적 고용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2. 고용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3. 필요한 서비스 시간, 및
 4. 서비스 축소 및 종료에 대한 서면 계획.
- C. 제공자는 참가자자의 PCP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참가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D. 제공자는 진행 상황 또는 진행 상황의 부재, 그리고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취업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월간 요약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참가자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참가자자의 PCP를 모니터링합니다. 여기에는 면제 서비스의 사용 또는 미사용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 F. 개인 관리 및 일상생활 활동 지원은 이 서비스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 G. 자원봉사는 서비스의 일부가 아닙니다.
- H. 간헐적인 지원은 현장, 원격, 참가자를 대신하거나 참가자를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고용을 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구직자와 고용주 간의 대면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공급자 직원과 고용주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 이 서비스는 참가자의 유급 근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포함하며, 고용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J. 지속적 고용지원에는 작업반, 근무 중 회의, 직원 개발, 부서 회의, 또는 참여자 대신 제공자가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포함하는 참여자 외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같은 그룹 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K. 참가자는 최저 임금 이상으로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수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통상 임금 및 급여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 L. 지속적 고용지원은 커뮤니티 연결 및 지속적 개인 고용지원과 함께 제공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과 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M. 이 서비스는 해당 지역 교육청이 학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참가자에게 지정한 수업 시간 동안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 이 제한에는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지원되는 모든 공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2. 홈스쿨링을 받는 참가자에게는 정규 학교 시간과 요일이 적용됩니다.
- N.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참가자의 경우, 1973년 재활법(직업 재활 서비스) 110조 또는 IDEA(20 U.S.C. 1401 et seq.)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참가자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문서에는 참가자가 직업 재활 서비스 대기 명단에 올라 있으며, 프로그램의 대기 명단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O. 인센티브 지급, 보조금 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없는 직업 훈련 비용에 대해서는 연방 재정 지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고용주가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 2. 지원되는 고용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또는
 - 3. 참가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에 대한 지급되는 금액.
- P. 지속적 고용지원은 친척이 제공할 수 있지만, 참가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Q. 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 기타 HCBS 면제 서비스, 또는 직업 재활을 통해 제공되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대체되거나, 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R. 이 TBI 면제 서비스가 승인되기 전에 직업 재활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제공자 요구 사항

- A. 모든 면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메디케이드 제공자일 것,
 - 2. 네브래스카 행정법 및 네브래스카주 법령의 적용가능한 조항을 모두 준수할 것,
 - 3. 메디케이드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자 계약에 설명된 기준을 준수할 것,
 - 4. 요청 시 DHHS 교육 이수할 것,
 - 5.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
- B. TBI 면제 제공자는 지속적 고용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DHHS가 승인한 TBI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C. 지속적 고용지원 제공자는 각 참여자의 의료 및 개인적 필요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고,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모든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 D. 제공자는 개인 또는 기관일 수 있습니다.
- E. 각 기관 제공자는 다음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1. 자격, 경험, 입증된 능력에 따라 직원을 고용,
 - 2. 직원이 필요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제공,
 - 3. 교육 계획을 DHHS에 제공하는 데 동의, 및
 - 4. 적절한 가용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
- F.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은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요청 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 교육, 심리학, 사회복지, 사회학, 인적 서비스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 이수/훈련; 또는
2. 지적 또는 기타 발달 장애(IDD)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 프로그램 작성 및 프로그램 데이터 수집/분석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전문 경력이 있거나, IDD를 가진 개인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생활 경험, 또는
3. 위에 언급된 교육과 4년 이상의 경력의 조합.

G. 지속적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받는 참가자의 고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요금

- A. 지속적 고용지원 서비스 요금은 DHHS에 의해 결정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 지속적 고용지원은 시간당 단위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 C.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적응 및 코칭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1. 사업 환경의 정상적인 일부로 제공되는 감독 활동에 대한 지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주는 모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 D. 면제 기금은 참가자의 임금을 지불하거나 인상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 지속적 고용지원 제공 중 교통수단 이용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F. 출퇴근 교통비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